

## 한국의 통계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sup>1)</sup>

### 류 제 복<sup>2)</sup>

#### 요 약

센서스 조사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었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사회가 발달하고 민주화될 수록 통계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조사비용이 증대하여 예산의 압박을 받고 요구되는 정보의 양과 질도 다양해지는 등, 조사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통계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국가들의 통계제도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 1. 머리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등 모든 분야에서 통계의 사용과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실제 생산하고 관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우리나라의 통계제도가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연구 검토하는 데는 정작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는 통계가 생산되기까지의 과정과 생산된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리 통계학자들은 주로 후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정부나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전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통계 발전을 위해서는 이 두 부분 모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계학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는 우리로써도 전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를 하는 데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통계제도가 된다. 물론 통계제도는 통계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나 여기서는 통계제도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한다. 한 나라의 통계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변경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때론 과감한 시도가 요구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91년 통계청의 김일현 국장이 정부통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바 있고, 1995년 제1회 「통계의 날」 기념 논문발표회에서 통계기구와 국가통계조직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제도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통계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 및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알아보았다.

1) 이 논문은 1996학년도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2) (360-764)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36, 청주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1995년까지 영국의 중앙통계국(Central Statistical Office)장과 정부통계기관(Government Statistical Service)의 책임자였던 William McLennan(1995)이 과거 수년간 변화를 모색하였고 앞으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첫째, 급변하는 세계에서 보다 나은 통계의 생산은 종종 보다 빠른 통계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과 둘째는, 통계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통계의 소비자들을 위하여 서비스를 증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 우리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통계의 사용자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통계의 질을 직접 평가하기는 힘들다. 이들 통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로 통계 작성기관, 즉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고 결국은 통계학자들에 대한 신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 2. 통계제도의 비교

통계는 의사결정, 연구 및 평가에 사용되는 중간물로써 하나의 통계는 여러 가지 목적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이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도 다른 통계와 결합해서 활용된다. 따라서 통계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류하며 통계기법이 체계화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통계제도를 결정하는 원칙이라고 UN 통계처보고서에는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보고서는 통계제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첫째는 국가의 경제성격, 발전정도 및 경제구조가 되고 둘째는 통계의 균형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통계기관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셋째로는 통계인력과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법과 이들 인력을 통계기관에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훈련장치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의 통계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에 따라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나뉘어 진다. 물론 분산형과 집중형에서도 그 정도가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 그리고 두 개를 적절히 결합한 혼합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분산형과 집중형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자 한다.

분산형의 통계제도에서는 국가의 여러 기관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직접 생산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별도의 독립기관이나 통계위원회 등에서 국가의 통계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 분산형의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을 들 수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분산형의 정도가 강하다. 집중형의 통계제도에서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계를 하나의 전담기관에서 작성하고 공표하며, 이들을 이용하는 각 기관에 제공하는 제도로써 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통계연락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집중형의 통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도 캐나다, 독일,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포루투칼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이며 이 중에서 캐나다는 완전집중형의 통계제도를 그리고 독일, 벨기에와 덴마크는 정도가 높은 집중형의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다. 한편, 특정 기관의 특정 관심사 및 중요 통계는 해당기관에서 작성하고 그 밖의 통계는 주된 통계기관이 전담하여 작성하는 혼합형의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는 주요 통계업무 분야가 독립된 부서의 책임 하에 남아 있기 때문에 주된 통계 작성기관은 주요 통계작성 외에도 국가 통계활동을 조정할 책임을 갖게 된다. 분산형의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프랑스는 집중형에 가깝고 한국, 영국과 대만은 집중형을 가미한 형태의 통계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혼합형의 통계제도라 볼 수 있다.

싱가폴의 경우는 1972년 이전까지는 집중형의 통계제도를 택하고 있었는데 1972년 초에 국가통계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분산형의 통계제도로 전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통계국(Department of Statistics)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던 많은 통계조사를 관련 부서로 점차 이관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싱가폴의 통계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통계국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통계협력을 개선시키고 통계직원을 승진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0년 7월 왕립 통계위원회(Royal Statistical Society)에서 “Official Statistics : Counting with Confidence”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영국의 통계실무자들이 영국의 통계는 양질이어야 하고 대중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정부나 일반 사용자들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하며 비용효율이 높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임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보다 중앙 집중적인 통계의 관리를 주장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후 1996년 4월 1일 기존의 중앙통계국(CSO)과 인구센서스 및 조사국(Office of Population Census and Survey)을 합병하여 중앙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을 발족시켜서 두 곳의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집중형을 가미하였다.

<표1> 분산형과 집중형 통계제도의 장·단점 비교

분산형의 장점 (집중형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 고유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계를 생산하는 데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li> <li>- 국가의 규모가 크거나 중앙통계기관이 비대해질 경우 분산형 제도는 신속한 통계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li> <li>- 통계학자들이 정책결정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부정책을 구상하고 감시 조정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li> <li>- 분산된 기관들로부터 얻어진 전체 예산이 단일 중앙통계기구의 예산 총액보다 훨씬 많게 되므로 전문 분야의 통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li> </ul>
집중형의 장점 (분산형의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li> <li>- 독립된 중앙통계기구는 특정 부처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통계의 생산이 가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li> <li>- 국가 전체의 통계업무를 총괄하므로 필요한 통계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균형된 통계를 생산하는 데 용이하다.</li> <li>- 하나의 기관에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한 기관에서 다양한 통계를 생산,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통계를 이용하는 데 편리하다.</li> <li>- 표준화된 통합 통계체계의 확립이 용이하고 하나의 정책이 다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의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li> </ul>

이들 두 제도들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테 이들의 장·단점은 서로 상반된다. 표1에서는 두 통계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였고, 표2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통계제도와 그 밖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표2> 주요 국가들의 통계제도 비교

구분 국가	조직 형태	국가통계 기관설립	인구민명당 통계인력	응답의무 규정	비밀보호 규정	정부지출 증의 비중
한국	분산형 (집중형 가미)	1948	1.1	1962	1962	('93) 0.05
일본	완전 분산형	1881 <sup>a</sup>	1.2			
미국	분산형	1902 <sup>a</sup>				
스페인	분산형	1856	1.2	1945	1989	('91) 0.1
영국	분산형 (집중형 가미)	1832	0.9	1920	1920	('91) 0.09
프랑스	집중형에 가까운 분산형	1800	1.7	1951	1946	('90) 0.11
캐나다	완전 집중형	1918 <sup>a</sup>	2.4			
독일	집중형의 정도가 높음	1805 (서독, 1872 <sup>a</sup> )	2.2	1920	1987	('89) 0.06
벨기에	집중형의 정도가 높음	1830	1.3	1936	1962	('91) 0.06
덴마크	집중형의 정도가 높음	1850	2.0	1966	1966	('91) 0.06
네덜란드	집중형	1826	2.0	1936	1899	('90) 0.12
포루투칼	집중형	1857	1.2	1935	1989	('91) 0.11

(주) 자료중 a는 주요 국의 통계조직 I, II(참고문헌 2)를 참고로 하였음

표2에 의하면 국가통계기관의 설립은 유럽이 19세기에 대부분 설립된 반면에 미국, 캐나다와 한국은 20세기 들어서 설립되었다. 이중에서도 우리 나라는 해방후인 1948년에 뒤늦게 국가통

계기관이 설립되었다. 한편 응답의무규정은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비밀보호규정과 같거나 먼저 제정되었는 테 네덜란드만이 19세기 말에 비밀보호규정이 제정되었고 그 밖의 다른 나라들은 모두 20세기에 들어서 제정되었다. 현대의 통계제도나 조직 하에서는 응답의무규정과 비밀보호규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응답자들의 비밀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응답이나 부정확한 응답이 증가하게 되고 또한 응답의무규정이 없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센서스(조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통계의 생산을 위하여 무응답이나 거짓응답에 대한 벌칙으로 벌금, 행정제재, 징역, 기소 등을 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벌칙을 부과하기에 앞서 설득과정을 거치고 있다. 각국의 통계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통계인력은 분산형의 국가가 집중형의 국가보다 적었다.

### 3. 우리 나라의 통계생산 현황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생산되고 있는 372종의 통계는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나누어진다. 지정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이고 일반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중 지정통계 이외의 통계를 말한다.

표3은 기관별 승인통계 작성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 99개의 작성기관 가운데 40개의 정부기관(40%)과 정부에서의 지정한 59개(60%)의 기관에서 승인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승인통계 수는 정부기관이 전체의 72%인 269개를 생산하고 있다.

<표 3> 기관별 승인통계 작성현황

(단위 : 기관, 종)

구 분	작 성 기 관 수	승 인 통 계 수
	99(100%)	372(100%)
정 부 기 관	40(40%)	269(72%)
· 중앙행정기관	25	219(59%)
· 지방자치단체	15	50(13%)
지 정 기 관	59(60%)	103(28%)
· 금융기관	8	31(8%)
· 정부투자기관	9	22(6%)
· 정부출현기관	12	7(2%)
· 공공법인	15	22(6%)
· 각종단체	15	21(6%)

(주) 지정기관 99개중에는 '96년 1월 1일 현재 통계를 작성하지 않는 19개의 기관도 포함되어 있음.

표4는 정부기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승인통계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25개 기관 중에서 통계청이 가장 많은 36종(16.4%)을 생산하고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 35종(16.0%), 농림수산부 27종(12.3%), 건설교통부 20종(9.1%), 산림청 19종(8.7%), 노동부 15종(6.9%) 순으로 6개의 중앙부처에서 전체의 69.4%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30개의 지정통계는 통계청, 농림수산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의 4개 부처에서만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통계청이 반이 넘는 17종(56.7%)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작성 방법별로는 84개의 조사통계중에서 통계청이 29종(3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농림수산부가 11종(13.0%), 산림청과 노동부가 10종(12.0%)씩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127종의 보고통계는 보건복지부가 27종(21.3%)으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에서 각각 17종(13.4%)과 16종(12.6%)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단 1종만의 보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한편 가공통계는 모두 8종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6종을 통계청에서 생산하고 산림청과 노동부에서 각각 1종씩을 생산하고 있다.

&lt;표 4&gt; 중앙 행정기관별 승인 통계현황

(단위 : 종)

구 분	계	총 류 별		작 성 방 법 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219	30	189	84	127
통 계 청	36(16.4)	17(56.7)	19(10.1)	29(34.5)	1( 0.8)	6(75.0)
보건복지부	35(16.0)	-	35(18.5)	8( 9.5)	27(21.3)	-
농림수산부	27(12.3)	9(30.0)	18( 9.5)	11(13.0)	16(12.6)	-
건설교통부	20( 9.1)	11( 3.3)	19(10.1)	3( 3.6)	17(13.4)	-
산 림 청	19( 8.7)	-	19(10.1)	10(12.0)	8( 6.3)	1(12.5)
노 동 부	15( 6.9)	3(10.0)	12( 6.3)	10(12.0)	5( 3.9)	-
기 타	67(30.6)	-	67(35.4)	13(15.4)	53(41.7)	1(12.5)

(주) ( )안의 숫자는 %를 나타냄

표5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승인통계를 부문별로 분류하였다. 부문에 따른 통계의 작성은 작성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와 실시의 여건에 따라 달리 생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유사한 조사의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좀 더 효과적인 조사의 실시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전체적인 조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조사자료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lt;표5&gt; 승인통계 작성현황(1996년 1월 1일)

부 문	통 계 수	작성기관 수	부 문	통 계 수	작성기관 수
인 구	21	16	도소매, 서비스	5	2
고용, 임금	18	8	경기, 기업경영	40	27
물가, 가계소비	17	11	국민, 지역계정	7	3
보건, 사회, 복지	55	14	재정, 금융	21	12
환경	9	2	무역, 외환	8	6
농림, 수산	60	6	교육, 문화, 과학	16	7
광공업, 에너지	15	7	기 타	21	19
건설, 주택, 토지	22	9	합 계	372	99
교통, 통신	37	10			

#### 4. 통계제도 개선을 위한 토의 및 제안

사회가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통계조사의 환경도 변화하게 된다.

영국에서는 1979년 Margaret Thatcher 정부가 들어선 이후 Rayner는 정부 관계기관과 정부 부처들을 시험조사한 후 1980년 12월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통계가 정부를 위해 존재하며, 정부의 통계요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통계기관은 실질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납세의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비용과 인원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부통계기관의 비용과 지원을 4년에 걸쳐서 절감하여 9001명의 인원이 6451명으로 감축되었다. 이를 위해서 일부의 조사를 폐지하거나 조사의 주기를 확장하고 조사표를 단순화하거나 표본의 크기를 축소하며 전산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자료의 질적인 약화를 가져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전산화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었다.

세계적인 통계조사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1. 시대의 변화에 맞는 조사표의 작성과 사생활보호를 위한 조사기법의 개발(조사표나 조사원의 능력, 조사기법의 진부함 등이 최근의 인구센서스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2. 직접(대면)조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체 조사방법의 도입과 개발(우편조사, 전화조사 등)
3.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자료은행(정보은행)의 설치

4. 전문통계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통계사제도를 도입하여 교직과정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생실습을 실시하듯 통계조사실습을 의무화시킨다.
5. T.V, 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홍보한다.

위와 같은 통계조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현행 우리 나라의 통계제도에 관한 제검토도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중·소규모의 국가에서는 많은 통계사무소의 설치비용과 조정문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집중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분산형의 경우에는 강력한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규모 국가에서도 자료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분산형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들 중에서 어느 제도가 좋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통계제도는 분산형에서 집중형으로 그리고 다시 분산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각국은 통계작성에 대한 방법, 정의, 분류 등의 조정에 관한 책임을 가지는 중앙기관을 필요로 한다.

통계위원회의 설립은 네덜란드(1826)와 벨기에(1841)가 선도적 국가로, Quetelet는 1841년에 벨기에 중앙통계위원회(Belgian Commission Centrale de la Statistique)를 설립했으며, 여기서는 공공 서비스 분야의 통계작업을 조정하는 일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20세기에 이르러서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통계위원회나 협의회에서는 자료의 공급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통계조사 및 일반통계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나루고 있다.

현행 우리 나라의 통계제도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통계조직을 재정비하고 우리에 적합한 통계제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각 부서에서 생산되고 있는 통계의 중복이나 효용성 등을 검토
2. 우리 나라의 통계생산에 소요되는 재정과 인력에 관한 정확한 평가
3. 통계의 서비스확충을 위한 제계의 검토
4. 국가의 통계를 계획하고 조정하여 주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통계위원회의 설립을 통계법 등에 명시한다. (분산형의 제도를 택하고 있던 집중형의 제도를 택하고 있던 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통계위원회가 있고 위원 수는 많개는 170명(프랑스)에서부터 7명(덴마크)으로 대략 20-30명 정도의 위원을 두고 있다. 또한 위원장은 통계부처의 장, 경제 부서장 또는 교수들이 역임하고 있다)
5. 통계학자들의 참여 폭과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확충한다.

통계의 필요성과 생산계획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생산된 통계는 정부차원의 통계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통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 일현 (1991). 정부통계의 발전 방향, 「통계학 연구」, 제 20권, 41-49.
- [2]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주요 국의 통계조직 I, II.
- [3]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8). 주요 국제기구의 통계활동.
- [4] 통계청 (1992). 한국통계 발전사 I, II
- [5] 통계청 (1994). 통계조직의 유형.
- [6] 통계청 (1995). 제1회 「통계의 날」 기념 논문집.
- [7] 통계청 (1996). 통계목록.
- [8] 통계청 (1996). EU 12개국의 통계제도.
- [9] 통계청 (1997). 통계제도의 국제비교.
- [10]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1996). Statistics Singapore, An Official Guide.
- [11] McLennan, W. (1995). Challenge Facing the United Kingdom Central Statistical Office, *Journal of Official Statistics*, Vol. 11, No. 1, 21-32.
- [12] McLennan, W. (1995). You Can Count on Us - with Confidence,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Vol. 158, Part 3, 467-489.

## The Current Status and the Improvable Directions of Statistical System in Korea<sup>3)</sup>

Jea-Bok Ryu<sup>4)</sup>

### Abstract

The difficulty of statistical survey has been weight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and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Since the survey cost increases and the quantity and the quality of the needed information become more diversity it is very hard to produce accurate and appropriate statistics in tim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urvey conditions properly, we reviewed the statistical system of korea and major countries, and proposed the improvable directions of our statistical system.

---

3)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1996 Chongju University Research Fund.

4) Department of Applied Statistics, Chongju University, 36 Naedokdong Sangdanggu Chongjusi Chungbuk, 360-764, Korea.